

# 「KB청년희망적금」특약

# 제1조 적용 범위

- ① 이 특약은 「KB청년희망적금」(이하 '이 적금'이라 합니다)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 및 「적립식예금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- ② 이 적금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은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
## 제2조 가입대상

-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합니다.
  - 1.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[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(6년을 한도로 함)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]
    - 가. 현역병,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·의무소방원
    - 나. 사회복무요원
    - 다.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
  - 2.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1)을 충족하는 사람
    - 가.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,600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)
    - 나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,600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,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,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)
    - ※ 주1)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.
  - 3.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<sup>주2)</sup>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"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" (「소득세법」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함)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
    - ※ 주2)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"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"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,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"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"로 확인되면 납입중지(가입대상 미해당) 처리됩니다.
- ② 이 적금에 가입한 후 제2조에 따른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입중지(가입대상 미해당) 처리됩니다.
- ③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고, 양도 및 명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.
- ④ 이 적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명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3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

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으로 하고. 계약기간은 이 적금의 가입일부터 24개월로 합니다.



# 제4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

이 적금은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, 매월(월 초일부터 말일까지) 50만원의 범위에서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#### 제5조 이율의 적용

- ① 이 적금의 만기이율은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합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.
- ② 이 적금의 기본이율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며, 우대이율은 제6조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합니다.

# 제6조 우대이율

아래 항목별로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. 단, 모든 우대 이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.

구 분	제공조건	
급여이체우대이율	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「급여이체실적 <sup>주1)</sup> 월 합산 금액 50만원이상」인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	
자동이체우대이율	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자동이체 등 창구이외의 채널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적금으로 납입된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	
첫거래우대이율	신규일 기준 예·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(단, 청약관련상품 <sup>주2)</sup> 제외)	

- 주1)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또는 대량이체 계약에 따른 급여성 선일자, 탑라인, 기업인터넷뱅킹 등에 의한 이체 실적(단, 급여이체 인정금액은 건별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)
- 주2)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, 청약부금, 청약예금 등

## 제7조 세율의 적용

- ①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  - 1. 가입자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1조의21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요건(이하 "과세특례 요건"이라 합니다)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
  - 2.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(제8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는 제외)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
  - 3.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

#### 제8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

① 이 적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(이하 "특별중도해지"라 합니다)하는 경우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

부과되지 않습니다. 다만, 특별중도해지를 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
- 1. 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.
- 2.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
  - 가. 천재지변
  - 나. 가입자의 퇴직
  - 다. 사업장의 폐업
  - 라.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·질병의 발생
  - 마.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파산선고
- ②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9조 저축장려금의 지급 등

- ① 저축장려금은 「서민의 금융생활의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합니다)이 제2조의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적금의 가입자(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를 포함)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.
  - 1.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해지한 가입자
  - 2. 이 적금의 계약기간 중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
- ② 저축장려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진흥원이 지급<sup>주3</sup>)합니다. 다만,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으로,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기 간	저축장려금
가입일 ~ 12개월	적금 납입원금의 2% (최대 12만원)
13개월 ~ 24개월	적금 납입원금의 4% (최대 24만원)

<sup>※</sup> 주3) 저축장려금은 은행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자소득과 함께 선지급합니다.

#### 제10조 기타

- ① 이 적금은 일부해지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,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.
- ②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제2조제1항제2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진흥원을 통해 확인합니다.
- ③ 이 적금의 가입자가 이 특약에 동의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의 지급조건, 지급액,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하고, 이에 따라 진흥원에 저축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22.02.09부터 시행합니다.

본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